



01

2019-1호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 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 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4
•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12
• 전라남도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	17
•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2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26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2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30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35
•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43
•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48
•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57
• 구한말 일제강점기 광천지역 독립운동정신 계승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64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35
-----------------------------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 2019년 첫 행사로 안전체험교육	
·화재 및 지하철 등 사고시 피해 최소화하는 반복훈련 필요	77
·부산시의회, '오직 민생' 새해 벽두부터 광복 민생행보	79
·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80
·경기도의회,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81
·충북도의회, 2019 신년화두 '민의동행(民議同行)'	82
·필리핀 이주여성대표, 경남도의회 의장 방문	83
·제주시의회, 제주 4·3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이하여	84

최근 제·개정 법령

·고등교육법	86
·도로교통법	87
·근로기준법	89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기도 포천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2제2항 등 관련 질의	91
·경기도 성남시「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질의	94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5841호, 2019. 1. 1., 제정]

▶ 주요목적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 함양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구·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조례 제 5841호(2019. 1. 1.)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종사자

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교류·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구·군,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시행 2019. 1. 7.] [경기도조례 제6006호, 2019. 1. 7., 제정]

▶ 주요목적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을 통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제조·가공한 해당 시·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

자치단체,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먹거리전략(이하 “먹거리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 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마.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먹거리전략 시행) ① 도지사는 먹거리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친환경 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전략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 위원회) ①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경기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국장

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도민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전라남도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

[시행 2018. 12. 27.] [전라남도조례 제4762호, 2018. 12. 27., 제정]

▣ 주요목적

전라남도 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생활공간”이란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3. “공동생활시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5. “홀로 사는 어르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다.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공동생활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을 활용한 공동생활공간으로서 5명 이상의 어르신 희망자가 있는 마을
2. 그 밖에 공동생활공간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마을

②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유희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우로 2명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입주 희망자가 있는 마을

2.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마을

제5조(입주대상) ① 공동생활공간 입주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동·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한다.

②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동생활시설 해당 지역의 동·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급식 지원
2.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지원
3. 이용자의 건강·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제7조(공동생활지도원)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위생·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동생활지도원의 임명방법·업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등)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4.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경상북도조례 제4145호, 2018. 12. 31., 제정]

▶ 주요목적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6호의 계획에 포함하여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도민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 2018. 12. 3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306호, 2018. 12. 31., 제정]

▣ 주요목적

모든 주민이 4차 산업혁명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도시의 비전인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기본이념) 스마트포용도시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도시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도시정책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3. 포용적 가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상생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도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포용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도시이며, 차별과 소외 없이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포용도시 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포용도시의 핵심가치
2. 스마트포용도시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포용도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 지정 및 변경)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에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감대 확산)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스마트포용도시의 비전을 확산해간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의 가치에 공감하는 국내외 기업,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간다.

제10조(연구·개발)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포용도시 서비스를 위한 ICT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제11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비전 확산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금품·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등

제1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포용도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주민은 스마트포용도시 구현과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5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1. 일상생활에서의 사회문제 등 의제화

2. 의제화된 사회문제 등의 해결방안 모색

3. 기타 스마트포용도시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의제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9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2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194호, 2018. 12. 27., 제정]

▣ 주요목적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임산부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출산가정
2.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7. 만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 하더라도 가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제4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산모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경우 40만원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하고 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산후조리비의 지원신청은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 시)

제7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9조(운영지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관리)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산후조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에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장과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을 5년간 보관한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310호, 2018. 12. 31., 제정]

▶ 주요목적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510호, 2018. 12. 31., 제정]

▣ 주요목적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우리동네 공유자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둔 자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의 변경·취소 및 사용중단)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 까지 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신청을 받아 허가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개방공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개방공간 또는 그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6. 개방공간 사용(예약 포함)을 3회 이상 취소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7. 과거 개방공간 및 그 장비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8.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
3.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방공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6. 구청장이 타인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제11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주취자, 소란행위자
2. 법정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의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되, 대상시설별 사용료는 2시간 기준 m^2 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

②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파손여부 등 확인)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개방

공간 및 그 부대시설 파손여부 등 구청장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면책)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 사용 중 사용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이 조례 및 이 조례를 근거로 제정한 자치법규 등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규정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9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12. 13.(목), 14:00~16:00/ 홍성의료원 별관1층 회의실 〉



I 총 평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조직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조직 발전을 찾아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 금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의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의료원 효율성과 공공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 충남 도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함.

II 주요 토론내용

I 주제발표

〈경기도의료원 조미숙 운영본부장〉

- 경기도의료원은 통합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 통합조직의 이상적 모형으로 제안으로는 합 조직의 분리보다는 모 병원구조, 시설(기능보강) 및 장비구매의 통합관리, 인사의 통합채용 및 전보교류, 업무의 통합 및 시스템화
- 어느 병원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6개 병원이 같이 모형을 만들어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추
- 간호사들 채용시 도내 의료원 근무 희망지를 적을 수 있으며, 6개 의료원에서 공채 의뢰가 들어오면 통합 채용
- 예비졸업자를 위해 12월쯤 라이선스 취득 기간까지 예비합격자로 관리해 주고 정식라이선스가 나오면 채용하는 방식
- 야간전담제는 아직 충남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국가도 일부 보존해 주고 있으며, 야간간호사한테는 월정 수당이 따로 있고 시간외까지 하면 6급 1호봉 정도의 수당이 더 지급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기존의 간호사 중에서 희망자들로 운영하고 있음.
- 병동지원인력(수가보전)의 확충으로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여줘야 경기도에 머무를 것 같아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충남도의 간호사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병상규모는 경기도 보다도 많은데 병동에 비해서 지위체계는 간호과장으로 되어 있음.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적 지위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근무강도나 난이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함.
- 간호부 신설에 대한 시기는 이제는 도래했다고 버며, 시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신설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됨.



- 대형병원의 간호부 독립은 의미가 크지만 의료원은 이러한 체계에 대한 것을 상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면서 간호부의 완전 독립도 향후 검토해 볼 의미는 있다고 생각함.
- 전보규정에 따라, 4급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전보 가능(4급 과장 5급 대리나 계장급), 일반직원은 본인의 희망전보에 의해 시행이 가능함.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할 때, 인사권은 본부가 가지고 있음.
 - 승진할 때는 본인이 직무계획서를 쓰고 인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고 승진이 되면 100%타병원으로 전보하는 체계 임.
- 언제 다른 병원으로 갈지 모르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생겨 능률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 전보 후에는 일정기간은 근무를 해야한다는 규칙을 세우고 규정 등에 명문화 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을것 같음.
- 근무지역 변경으로 인한 직원 배려(교통비 및 관사 지원 등)
- 순환근무제 설계를 할 때 병원간 직원의 니즈 및 생활권역을 최대한 고려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전보가 되거나 원거리에서 장기간 지사 근무 직원에 대해 차기 전보에서의 혜택 부여(희망전보제, 전보예고제)를 고려

2 지정토론 (6인)

① 정태은(서산의료원 진료부장)

- 충남 4개 의료원에 인적자원을 전담을 하는 부서 부재
 - 건물, 장비·시설, 업무처리시스템, 행정, 인증·평가, 경영 등 모두 사람이 하는데 조직이 없음. 4개 의료원 조직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의 현주소를 대변 한다고 봄.
- 지역의료원 조직발전을 위해 3가지를 제안

① Re-Naming(이름을 바꾸자!)

㉑ 전산실 → 의료정보실

- ▶ 병원을 오시는 분들로부터 나오는 의료정보를 저장·보관·활용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까지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가 되는 정보를 빅데이터중에서 뽑아내는 의료정보실로의 역할

㉒ 경리계 → 재무회계(운영)팀

- ▶ 서산의료원의 경우 3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이 517억 원 인데 그걸 경리라는 말로 담을 수가 있을까? 우리 조직이 계속 경리계, 경리팀으로 있으면 경리수준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경리수준의 업무성과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근본적인 한계임.

② Re-Set(재배치 하자!)

㉑ 전산실을 원무과 → 원장직속

- ▶ 원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병원 전체에 들어오고 나가는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프로세싱하여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의 장기발전 전략 가운데 도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

㉒ 건강검진센터는 원무과 → 진료부

- ▶ 건강검진은 진료인데 업무의 성격과 맞지 않는데 원무과에 있음

㉓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영양실은 관리부 → 진료부

- ▶ 물리치료사·의무기록사·영양사들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성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진료를 지원하는 부서의 사람들로 재워치를 찾아주어야 함.

③ New Buiding(새로 만들자!)

㉑ 의료원장 임기제 4년제, 진료부원장·간호부장 신설, 관리부장(공채, 의료원 순환근무제, 보직임기제 등)

㉒ 인적자원팀, 기획홍보팀, 대외협력팀 신설

② 이석구(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

- 지방의료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와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어떤 정체성과 기존 의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임.
- 의료원에 법무사, 노무관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두는 부분 고려
 - 예를 들어 공공병원이 환자의 공익을 얼마나 변호해 주고 있는가? 의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의하고 싶어도 누구든 도와주지 못함.



- 간호사는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중요하며, 초임일 경우 근무하기 어려워하므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것임.
- 의사 인력관리에 있어 병원관리는 단위별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성과급제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야간 당직 및 응급실 의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본인이 국립감염병원 설계를 마치고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 일부를 겸직교수를 시키고자 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도립대학교에 보건의료관련 학과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을 듯함.
 - 도립대학을 잘 활용해서 인력의 명예·자존감도 올려주면서 교육을 통해 그 인력이 의료원에 취업도 할 수 있는 고민도 해보는 것을 어떨까 함.

③ 김진호(홍성의료원장)

- 내·외부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부족한 간호사의 안전적 공급을 위하여 도립간호대학 설립이 필요
- 신규직원 채용 시 도에서 일괄 모집하고 교육 후, 각 의료원에 배치하게 되면 신뢰성 향상으로 인해 많은 인원 확보가 가능하고 행정직의 경우 지원자 수준이 높을 것이며, 외부인사의 개입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산부인과 등 공익적 적자 부분에 대한 정상예산 지원 방안 필요
- 정보교류, 의료원 운영상황 공유 및 벤치마킹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4개 의료원의 임직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 함.
- 의료원의 복수직급제, 보직임기제 도입·실행, 각 의료원간 순환근무 등 고려
- 현재 간호과의 규모가 커지고 앞으로 역할 및 요구되는 업무가 점점 더 커질 것을 감안 간호부 설립에 대해 고민할 시기

④ 박기수(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의료원지부장)

- 공공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충남도립대에 간호과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공의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 없이는 우리의 공공의료를 담보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 없기에 거버넌스 구축이 충분히 되어야 함.
- 찬안의료원의 경우 조직을 하나로 뭉쳐보자 해서 체불은 있었지만 복수직급제를
시행했었는데,
 - (장점) 1년 정도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추진력 효과는 있었으며, 승진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과열 경쟁 해소가 있었음.
 - (단점) 1년 후 보직 맡은 사람의 업무만 과중되고 보상은 따라오지 않아 서로
일 안하는 분위기로 변함.
-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어려움.
- 간호사 수급방안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직률을 낮출 수 있고
채용효과 이상을 낼수 있다고 것이 노동조합의 의견임.
 - 간호사 인력문제를 이야기할 때 학교를 늘리던가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간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노동 근무환경의 개선 없이는 100명을 채용 한다고 해도
이직률을 낮출 수 없음.

⑤ 전용택(홍성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위원장)

- 간호 인력들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도시지역을 선호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홍성의료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재활병동까지 임시라지만 문을 닫고 있는데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며 지방에서 농어촌을
지키고 사는데 의료혜택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함.
-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의료원에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시설·장비의 현대화가 되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함.

⑥ 조광희(충청남도 보건정책과장)

-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의료원장·진료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원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음.

- 이교수님께서 충남도립대에 겸임교수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며, 도립대 간호학과 설립은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40명을 정원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임.
- 도에서는 90여명의 학생에 대해서 금액은 적지만 마중물로 장학금을 만들고 있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누구나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
- 홍성의료원장님 말씀대로 교육문제도 해소하며, 도에서 정규직의 일괄모집 건, 공익적인 적자 부분을 어떻게 매워 나가야 하는지, 필수 의료, 착한 적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석을 필요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통계·분석, 병원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검토를 하고 있음.
- 충남의료원 과장급이상 간부급의 장기 근무에 따른 조직 관료화 등 성장 동력 약화로 관리부장 및 과장급 이상 인사교류 확대 검토
- 간호사 부족에 따라 휴관, 축소운영 등 의료원 경영 애로로 위상 제고를 위한 간호부장제 실시 여론도 듣고 있어.
- 충남의료원 직제 및 내·외부 명칭 개정을 통한 수평적 관계 변화로 소속감과 자존감 제고에 노력하고자 함.

3 청중토론

- 도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보다는 취업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혜택을 돌린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간호사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는 것도 힘들어 함.
-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저희는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고 근무를 함. 간호사의 업무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어렵겠지만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대근무의 어려움이 많이 있음.

- 장학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간호사들에게 교사들이 벽지학교에 근무하면 승진 가점을 주는 것처럼 간호사들에게도 적용해 주었으면 함.

[질의 : 서산의료원 간호사]

- 지금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도 많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근무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장학금 조금 줘서 오겠느냐, 여기에 있는 것보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연봉이 1,000만원씩 더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3년동안 몇 백만원 받아서 발 묶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있다가도 떠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 :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체계적인 조직 모델 구축방안 검토
2. 간호사 수급에 따른 다양하고 안정적인 채용방안 강구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충청남도의 지방의료원 조직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의료원의 효율성과 공공성 보장을 통해서 충남 도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출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보건정책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12. 17.(월), 19:00~20:30/ 논산문화원 다목적홀 〉



I 총 평

- 논산 연무읍 일원에 조성되는 국방산업으로 특화된 국가사업단지의 지정과 이후의 발전 방향등의 논의를 통해 국방산업단지의 정착화를 토대로 지역 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제적인 논산 국방산업단지의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국방산업단지내의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유치, 관련 연구기관 설치와 논산에 있는 훈련소, 3군 사령부 등 국방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산·학·연의 연계 등을 통한 업종의 다양화 등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로서 기대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토론내용

I 주제발표

< 조운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 논산 국방산업 육성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제안

- 논산국방산업의 육성방향으로
 - 논산국방산단내 유치산업은 전력지원체계 산업임
 - 논산은 3군 사령부, 국방대학원, 부사관학교등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전력체계)의 테스트베드로써의 최적지임
 - 국방산업 관련 방위산업 진흥원 설립을 통한 관련 국방산업·기업 등의 집적을 유도하여 국방 관련 산업 등의 클러스터화
- 논산국방산업단지의 추진과제로써
 - 논산 국방산업단지 내 한국형 국방산업 실증센터 설립을 통한 전력지원체계 양산 주도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는 한국형 링컨랩 구축
 - 전역 지원체계 관련 창업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국방 창업보육센터 설립(추진 T/F운영)

2 지정토론 (4인)

① 신동헌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 논산국방산업단지의 조성 방향

- 미래의 광역 클러스터화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 목표
 - 대전(연구기능), 계룡(제조기능), 논산(시험기능)
- 논산국방산업단지 내 주요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토록 노력



□ 논산국방산업단지의 추진 계획

- 국가적 청사진을 토대로
 - 기업의향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서 작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실제적 국방산업단지 개발할 예정임

⇒ 김형도 위원장 질의

- 국방산업단지는 언제쯤 실제적 운영이 가능하나
 - 기본계획 작성(1년) (LH(사업시행자)+충남도+논산시) ⇒ 예비타당성조사 (6개월~1년) ⇒ 산단 조성 (2021~2022)
 - 기업입지는 2022년 이후 가능

② 신동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도적 지원방안

- 유치업종의 특성상 중소기업 입주예상으로 임대산업단지 지정 필요
 - 논산국방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로써 중소기업 위주이며, 이에 입지비용 경감 필요
- 국가계약법상 특례조항 신설
 - 지역 내 산업단지내의 생산품을 일정비율로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
- 사업시행자 인센티브 부여
 - 행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사업시행자에게도 인센티브 부여
 - 미분양시 일정부분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충남도, 논산시)

□ 정주환경개선

-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하면 기업유치해도 실효성이 없다
- 현,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생산단 2.0 사업을 국방산업단지 조성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상생산단 2.0사업 : 직장과 주거를 근거리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직주환경을 지역 내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

역신지원기관 필요

- 기업의 필요로 하는 산학융합원 충청남도 신설, 국방벤처센터 설립
-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수립을 통한 지원기관등을 고민

일자리 창출

- 제대군인지원센터 수립
 - 지역 내 및 타 지역의 제대 군인들의 일자리 제공, 관련 교육, 지원 등의 목적

⇒ **김형도 위원장 제안**

- 조례상 입지보조금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례상 명시

③ 이인배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논산국방산업단지과 타 지역 국방산업과의 차별성 부각 필요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종의 품목과 수요자에게 맞는 품목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 창원, 대전 등의 현재 운용중인 타 지역 국방산업과의 차별성 부각 필요

④ 이건호 (충청남도 미래성장본부장)

- 경제통상실 : 국방산단 지정 및 조성등의 업무
- 미래성장본부 : 국방산업 육성, 기관 유치등의 업무

국방클러스터 육성(민선 7기 공약) ⇒ 미래성장 동력화

- 국방산업단지 육성 및 산학연 협력 연구
 - 국방벤처센터와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R&D연구 과제 발굴
 - 향후 국방 관련한 첨단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발굴 및 유치
 - 이전가능 공공기관의 이전 논리 개발 및 중앙정부의 설득 노력
- 육사이전추진
 - 단기 용역(연말까지)으로 전략과제 도출



- 육사이전 T/F팀 구성(육사이전을 위한 논리 개발)
- 서울시 등의 타 지역의 육사이전 정책 동향 파악
- 타 지역 대비 차별화된 논리 개발 등의 치밀한 준비 필요

⇒ **김형도 위원장 질의 : 지원팀 개설**

- 장기적 관점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전담팀 필요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논산국방산단의 주요 유치업종인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2. 논산국방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국방산업과의 차별화 전략 부족
 3. 논산국방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미흡
 4. 논산국방산단 내 기업 및 관련(연구)기관 등의 유치 방안 필요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논산국방산단의 주요업종인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
- 논산국방산단과 타 지역 국방 산단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활동 시 적극적 고려
-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언 및 검토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미래성장본부, 경제통상실)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12. 18.(화), 14:00~16:00/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



I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한 토론의 장이었으며,
 -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官이 주도하는 형태의 사업 추진이 아닌 행정, 주민, 상인 등을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 또한, 공동체 기반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 밀착형 사회조직이 육성되어야 함에 공감하였음.
 -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의 필요성 등이 토의되었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함.



II 주요 토론내용

I 주제발표

《박병철 사회적기업 (주)아름다운마을 대표》

- 官 중심의 도시정비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도시공동체 기반형의 도시 재생이 필요함.
 - 일회성 사업 유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과 주민의 변화 유도
 - 행정, 주민, 상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교감이 녹아있는 정책 실현
 - 산학 협력을 통한 젊은 층의 사회참여 유도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세대 갈등 완화
- 도시재생이 물리적 재생산업에서 공동체기반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시됨.
 - 사회적기업, 청년 활동가, 마을기업, 주민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조직의 활성화와 연대로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 확대
 - 장기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육성
 - 서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5월 市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정 후 다양한 도시재생 현장발굴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 원도심 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 쇠퇴 원인과 대처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 시청, 버스터미널 이전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장기적인 소통채널이 구축되어야 함.
 - 또한 원도심 낙후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 사례 발굴과 거버넌스 조직의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장기적인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활용하여야 하며, 자주적인 문제발굴과 해결을 위한 주민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해야함.

2 종합토론(4인)

① 임준홍(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 도시재생은 주민주도의 장소 중심적 협력사업으로 갈등 조정 및 관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서산 원도심은 아직 일자리와 상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유동인구 또한 많으나, 상권 다양성 부족에 따른 분화와 문화예술의 조화가 요구됨.
 - 도심에 주거·사무·쇼핑·문화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콤팩트시티 모델 조성
- 서산의 특징과 시정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개인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
 - 미이용·저이용 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 스마트 공유사회 구축과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자력적인 재생을 위한 지원
 - 원도심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 등 공간은 비우고, 활동을 채우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전환이 필요함.
- 지역기업과 주민이 관과 함께 도시재생펀드와 클라우드펀딩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적 사업관리
 - 기획부터 관리까지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심활성화 정책이 도시재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임.
 - 기업의 기부로 조성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 기여와 공헌을 높일 수 있으며, 소속 구성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 활동과 소비의 주체인 여성과 아동을 중시한 상권 분석이 요구되며, 도시재생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지역대학·활동가·숨은인력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직의 힘과 계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부 사업과의 연계성이 필요함.

② 김인수(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 온라인 구매패턴의 등장과 새로운 유통구조의 성장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지역상권의 침체는 심화되고 있음.
- 서산시에서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6월 충남연구원을 통해 「서산 오픈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완료하였음.
 -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용역에 착수 예정이며, 변화로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구도심 변화로에 내년 초까지 총2억5천만원의 야간(고보)조명 설치와 벽화 그리기 사업이 추진되며, 간편결재사업·온누리상품권사용·창년공방/창업센터 등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임.
- 민관협치를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 원도심 상권 활성화 현안문제였던 상인회 등록기준을 적극 검토하여 변화로와 중심상가 일대 3개 상인회를 구성하여 등록을 하였음.
 - 변화로와 중앙로 상인들도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와 도 단위 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참여해야 할 것임.

③ 김진식(한서대학교 교수)

-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대학 봉사동아리 활동을 위한 과제
 - 대학에서의 봉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지원과 전공별 보유 기자재의 대회활동에 대한 허용
 - 대학 내 행정조직 지원 구성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자문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

- 지자체 내에서의 조직구성으로 대학과 마을의 협력관계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또는 부서의 구성
- 대학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에 사업지구의 주민공동체와 지역 소재 대학교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학교조직으로 한서대학교지역콜라보센터(HLOC)가 필요함.
 - 지자체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구성으로 지역사회+행정+대학(민간조직)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함.

④ 한기홍(서산역사문화연구소장)

- 원도심인 상업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방법은?

(답변 : 박병철 사회적기업 ㈜아름다운마을 대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모인 자리임.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젊은이들이 도심 상권에 녹아날 수 있도록 대학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흥대거리가 살아난 이유가 있듯이 한서대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상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가가 중요할 것임.

- 상업지역에서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커져야 선순환이 이루어 질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박병철 사회적기업 ㈜아름다운마을 대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하겠음.

- 쇠락해가는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 온 지역민이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이며, 주도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임.

⑤ 가구현(서산시중앙상가변영회장)

- 지속되는 도시재생을 위해 청년창업, 공실 가게의 임대를 제시하지만,



- 재임대나 청년창업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건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시의 확산 발전정책이나 신도시 조성 보다는 열린 행정으로 기존 원도심 재생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지역 내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시청과 버스터미널 이전 이슈로 토지 투기가 조장되어 지역갈등이 깊어가고 있음.
 - 뉴딜정책/ 도시재생정책을 말하고 있으나, 시청과 버스터미널이 이전된 원도심의 희망을 잃은 원주민과 상인들의 상실감 위에 그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임.
 - 시장 활성화, 인구 증가, 인프라 조성 후에 필히 시민 의견 청취와 소통을 거쳐 이전하는 것이 합당함.
 - 청년창업, 지역문화축제 대학생 참여 유도 등 변화를 추구해야지만 건물 소유주는 현실 자각 부족으로 변형했던 과거만을 생각하고 있어 아쉬움
 - 관 주도의 오랜 관습으로 한뜻을 모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주민 주도로 도시를 재생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3 자유토론(질의답변)

- 시장 100대 공약사업 중 '원도심 청년문화 거리 조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또한, 당진목 4거리에서 광장까지 관통하는 도로를 단기간이 아닌 5~10년 장기적 계획으로 확장해야 원도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항상 예산이 수반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원도심 주민들은 과거와 현재까지 많은 세금 납부로 市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합당하게 혜택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질의 : 청중(나순의 지역주민)]

⇒ 정책적인 문제는 책임성이 따르며 기관 내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함.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 김영수 의원]

○ 그렇다면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라도 답변을 요청함.

[질의 : 청중(나순의 지역주민)]

⇒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참석했던 교육장소에 읍장님이 인사말을 했었는데, 1호광장에서 현재 여고 앞에 있는 육교까지 몇 년 안에 8차선을 만들거라 내용이 있었음. 8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물가로도 주변 상가와 토지를 매입 하지 못했음. 프랑스처럼 공원지역을 확보하고 광장도로를 만들었다면 모를까, 많은 고민이 요구되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님.

[답변 : 김영수 의원]

○ 거버넌스 체제 구축 후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관+전문가(활동가) 세 개의 축이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서산은 官 주도 형태로 나머지 축들의 기능이 약하고 불균형하다고 생각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활동가) 역할이 중요한데 지원에 의한 활동만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따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익모델을 가져야하는지 답변을 요청함.

[질의 : 청중2(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 김성민)]

⇒ 전문가(활동가)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비가 지속적으로 조달되어야 함.

현재 대부분의 활동들이 명예나 공부한다는 마음 또는 지역사회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수익모델을 만들고 수익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는 어려우며, 어느 하나의 사례를 성공사례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음.



다만, 안산 로컬푸드매장, 장위동 동네목수, 홍대의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카페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역동적인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좌장 정리〉

정치성이 가미되지 않은 정말 관심있는 분들과 공감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싶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자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대화와 산업화로 대도시가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시골은 소멸하고 궁핍해졌었지요. 이제는 예전에 전성기를 누렸던 원도심이 나이를 먹어 국토균형 발전과 신도시개발 등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부익부빈익빈의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구도심은 공동화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한 곳이 아프면 건강할 수 없듯이 생명체적인 도시도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시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가 건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고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2.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원도심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모델 구축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관이 주도하는 형태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치적 정책결정,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지역사회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고 고유성을 살린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해야 함.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
 - 충청남도(건축도시과)
 - 서산시(일자리경제)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사오고 싶은 천안 동남구를 위한 변화하는 학교정책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12. 19.(수), 14:00~16:30/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있는 동남구 소재 학교의 쇠퇴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주민과 도의회가 동남구 소재 학교정책에 관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원도심의 인구 유입방안과 학교정책 개선방향을 논의,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 참가자 대부분 동남구 소재의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특성화 교육 시스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앞으로, 천안 동남구의 특성화 교육도시 사업을 위한 실질적 실천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원, 학부모 및 학생의 잘못된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에 공감하는 결론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I 주제발표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천안시 동남구만의 독자적인 외국어 교육특구 및 특성화 교육의 브랜드화를 연구하여 시민들의 교육발전 요구에 대한 주민·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의 발굴과 지속적 실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이러한 특성화 교육 및 4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의교육을 통해 도농복합형, 교육적 환경을 특화할 수 있는 각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유입과 지속적인 학교발전 전략 확충
-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간의 다양한 논의와 동남구 자체의 특성화 교육의 구성과 정책을 공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 추진 과제로
 - 다중언어 이해교육의 강화
 - 다문화 교육
 - 동남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또한, 신도시, 도심과 농촌의 균형발전이 가장 큰 현안으로써, 천안시 원도심과 낙후한 동부지역 6개 읍·면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의 학교 간 불균형 인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년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기관 시설 확충이나 교직원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성 확보, 학생과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와 수용성 제고 등을 병행해 나아가야만 교육의 내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교육부, 정부기관의 천안 교육교류 증진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외국어 교육도시로써 천안 동남구의 교육정책 방향을 정립



하여 교육특구 사업과 특성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담보한 신청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2 종합토론(6인)

① 김준표 (용소초등학교 교장)

- 천안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천안초등학교를 매개로 학생과 시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과 전시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단기적으로는 천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문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함.
- 원도심 학교를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하며, 도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여 혁신형학교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도시형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농어촌과 동일한 유능한 교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목표가 불분명한 사업, 예산소모성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원도심을 재울 콘텐츠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수렴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물리적 공간의 개선이 아닌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② 양은선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장)

- 동남구의 학생들은 통학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는 5~10분 거리를 버스를 이용하여 1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통학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을버스, 스쿨버스 등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동남구의 외곽지역에 다양한 복지시설 등 동남구형 마을을 계획하고 획일적인 고층형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형 마을을 건설하여 차별화를 두어 인구유입을 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천안은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시민들이 늘고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다중언어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더하여 심화과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③ 안동순(천안시 도시재생과장)

- 천안시의 인구는 90년대에 31만에서 16년에 62만으로 증가하였으나, 천안시 동남구는 90년대 산업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분산으로 원도심의 경우 공동화의 진행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천안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남구청 복합개발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민간영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여 원도심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에 활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에 있음.

④ 김현숙(청수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원도심의 교육개혁을 위해서 타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방식 변화의 성공한 전례를 들어 원도심학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원도심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에게 차등점수 부여나 천안시내 근무기간 연장의 혜택 부여 및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능력개발을 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한, 다중언어 학교를 중점으로 하는 마을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외국어 교육환경을 만들어 동남구만의 교육자산으로 만들 것에 대한 제안함.

⑤ 정명근(정명근미래교육연구소장)

- 원도심 내의 빈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기획을 해야 하며, 현재 원도심 내의 건물 3채 중 1채가 공실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 독서와 외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을 일자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원도심의 실질적 구성원인 중장년층 시민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식견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⑥ 이병례(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 18년 4월 현재 교육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정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천안은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충남교육청은 ‘충남다문화교육센터’를 4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동남구의 다문화교육 특성화를 위하여
 -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지역 유관기관 역할 분담 및 지원단을 운영
 -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진입 전 학생들을 위한 ‘입학준비교’를 설치할 예정
- 동남구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계발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교육은 현재 충남교육청의 중점적 현안사항으로 충남교육청과 시·군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충남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 적응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음.
- 특히, 동남구 다문화가정 인재 육성 특화방안을 가지고 전문가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남구 주민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 학생 및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행중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非)다문화가정 학생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동남구 원도심 소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과 사업을 적극지원 할 계획임.

③ 자유토론(질의답변)

-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서고속철의 신속한 건설추진이 필요하며, 천안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수난과, 독립 쟁취를 위해 외세와 싸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는 사료 및 유물 등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활용한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터널의 건설을 검토해야 함.

[질의 : 유관순사단 부의장 정순갑]

⇒ 동서횡단 철도는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청주공항으로 가는 철도를 추진하여 원도심의 유동인구를 높일 계획 중임.

[답변 :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도 인제의 만해 한용운 문화센터와 같은 성공사례를 학습하여 천안시도 역사적·문화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활용한 문화센터와 체험학습센터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 공간확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도시로 발전이 필요함.

[추가의견 : 원성동 주민]

- 다문화가정 부모와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심리 및 언어교육이 필요하나, 충남의 학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타 지자체(서울시 송파구)와 같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추가의견 : 심우섭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충남교육청은 천안북중을 다문화가정 입학 전 예비학교로 지정하여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부모의 상담과 관련해서 신청인이 있다면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겠음.

[답변 : 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 현재 외국인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로 학교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 공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의 교육이 어려움. 따라서 자녀의 교육문제로 학교에 출석할 경우 공가로 처리될 것을 건의함.

[추가의견 : 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남구 소재의 자량이기도 한 전통있는 학교의 특성화교육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원도심에 있는 학교와 신도시에 있는 학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청과 협의하여 원도심학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발언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위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천안시 동남구를 교육 도시로의 독자적인 교육브랜드 가치 창출의 필요성
 2.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변화 및 개선책 마련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외국어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특화도시 추진의 필요성
-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교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학교 운영 확대 방안필요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
 - 천안시(도시재생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 충청남도교육청(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구한말 일제강점기 광천지역 독립운동 계승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12. 20.(목), 14:00~16:30/ 광천제일고등학교 소강당 〉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한말 일제강점기 광천지역 독립운동정신 계승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광천인의 강인한 민족의식을 되새겨 보며,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 참가자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광천지역 3·1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인 일농 서승재 선생 등 지역인물이 활동했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재조명한 의정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의미를 두었음.
- 앞으로, 광천지역 3·1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지역의 어른들이 생존 시 사료의 발굴이 이루어져 되며,
-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보존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I 주제발표

① 손세제 (홍주향교 장의)

- 내포지역은 산악지형이 많고 예로부터 유배지로 활용되어 정통 성리학에 기반한 척사정신과 무장투쟁 정신이 강한 폐쇄성을 지닌 지역적 정서를 지니고 있었음.
- 그럼에도 내포지역에 교육운동 등 사회진화론적 계몽활동 등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유림에 의해 이루어진 이유는 민족우월성을 근간으로 한 애족 애민의 정신이 발현된 결과였음.
- 구한말 일제강점기 1908년 광천지역에는 기호흥학회홍주지회 서승태 선생을 중심으로 교육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한 애국계몽활동이 전개되었으며,
- 민중을 일깨우고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역 구심점도 유림이었던 내포 지역에서 서구를 배워 경제·문화적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회복을 하자는 자강운동을 실천하고자 학교가 설립되었음.
- 그 선도적인 역할을 서승태 선생이 '덕명학교' 설립으로 시작하였으며, 직접 교과서를 써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민족의 실력을 키워 일제침략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음.
- 내포지역에는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김복한, 기호흥학회홍주지회 여도였던 서승태, 청산리전투를 벌여 승리한 김좌진 등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였으며, 독립운동단체인 무공회 등이 독립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알려져 있지 않음.
- 지역민들조차 모르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지금이라도 찾고자 노력하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필요하며, 3·1운동실록 편찬을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내포의 정신문화연구전담기구도 설립하여야 함.
- 도청 이전 10년이 되어가지만 충남을 대표할만한 아이콘이 없는 안타까움 해소와 충남정신의 포양을 위해서도 내포학 연구를 서둘러야 함.

② 김진호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 광천의 독립운동 기록은 △일제시대 공주지방법원 판결문 △독립운동사 3권에 기록된 1971년 광천시장 만세운동 △홍양사 책자에 기록되어 있으나, 광천에 최초 전해진 독립선언서가 구해진 과정이나 현존은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광천의 3·1독립운동은 홍성에서 최초로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지역이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격문이 배포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의병, 애국계몽 활동을 전개한 지역인사인 서승태의 활동과 영향이 있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2019년은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관련 사료 등을 모아 '홍성3·1독립운동실록' 편찬을 함으로써 향후 홍성 3·1독립운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③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일농 서승태의 인생역정과 민족운동 역할을 살펴보기에는 기존의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조망은 어려운 여건임.
- 유림이 중추가 되었던 홍주지역의 독립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유림의 활동과 학맥에 대한 사료발굴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
- 특히 일농 서승태와 함께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민족운동가로 활동한 일농 서승태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광천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며,
-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청·군청 등이 연계하여 '팔명학교'로 대표되는 홍성의 근대교육기관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조사도 실행되어야 함.

④ 박성목 (예산역사연구소장)

- 전통 유학사상 기반의 위정척사 학풍이 보편적으로 강했던 홍주지역에서 사립학교 설립으로 신학문을 가르쳐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 광천지역 선구적 인물에 대한 조명작업이 필요함.



- 일제강점기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사 광천지부설립에 관한 사항, 관련인물 및 활동내용, 유적지 등에 대한 깊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근대민족운동의 뿌리였던 동학혁명의 유족 발굴 등 관련된 조사가 한 차원 높게 진행되어 활동유적지와 참여인물을 밝혀내야 함.

2 지정토론(4인)

① 이종민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장

- 충청남도의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 사업 안내함.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18년: 70,000천원, 19년: 75,000천원)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 이외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5~10만원 추가 지원
 - 2018년 3·1절 기념일에 320명 및 광복절 기념일에 327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자 독립유공자 위문 실시
 - 「3·1평화운동 백년의 집」건립, 3·1운동 100주년 정부기념식 충남 개최, 충남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군의 지역별 독립운동사도 발굴 및 재조명되어야겠지만,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운동을 연구하여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②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진호 선생님의 기존 연구자료에서는 3·1운동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오늘 발표문에서는 3·1독립운동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 ⇒ 인류 보편적 정신에 기반한 자유·평등·정의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적 이야기로 독립운동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답변 : 김진호 연구원]

- 서승태와 덕명학교에 대한 연구 및 홍주지역 유림의 활동과 학맥에 관련된 사료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 일농 서승태 선생 초상화 그리기, 백일장, 골든벨, 덕명 교정에서의 미술대회 등 체험형태의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박물관이 건물 안에만 갇혀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야외의 길과 자연을 활용하여 역사를 접하기 쉬운 형태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료발굴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며, 국사편찬위원회 자료가 내년 3.1부터 공개되어 검색이 가능하게 될 예정임.

[답변 : 김형목 책임연구위원]

- 의병 이후 근대교육과 계몽운동에 주목한 서승태의 사상적인 변화의 고찰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홍성 근대교육기관에 대한 자료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서승태의 인관관계 추적으로 통한 광천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 큰 매개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료나 자료를 수집해야 함.
- 동학이 1905년을 기점으로 천도교로 바뀐 이후의 내포재역의 양상과 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도 재조명 되어야 함.

③ 김종영/ 전)혜전대학교 교수

- 광천지역의 독립운동 활동과 일농 서승태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일농서선생홍학기념비'와 서승태가 직접 집필한 3권의 교과서 '삼요론, 삼력병합설, 자유성' 뿐으로 지속적인 사료 발굴이 요구됨.
- 서승태가 전 재산을 털어 설립하여 신교육을 도모한 광천 공교육의 상징이며 효시인 덕명학교가 100년의 역사를 지냈음에도 존폐위기에 처해 있음.
- 개화, 애국운동, 자유 등의 정신이 간직된 이름인 '덕명'을 지키고, 서승태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자유토론(질의답변)

- 광천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후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이들을 통한 자료 수집에 노력해야 하며, 3.1독립운동 100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사료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질의 : 청중(최칠수 지역주민)]



⇒ 소중한 말씀 감사하며, 이번 토론회가 광천지역 독립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답변:김일환 교수]

- 할아버지께서 직접 이름 지은 ‘덕명학교’가 학생들이 감소하여 폐교가 되고 ‘광천초등학교’로 개명된다는 소식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께서 학교 세워지기 전부터 집에서 밥을 먹여 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할아버지께서 직접 작성하신 교과서도, 친필로 작성된 독립선언서 격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할아버지의 민족정신이 담겨 있는 ‘덕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질의: 청중2(서영숙-서승태 증손녀)]

⇒ 소중한 말씀 감사하며, 이번 토론회가 광천지역 독립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답변:김일환 교수]

- ‘마을학회 일소공도’에서「마을」을 발간하면서 영상, 사료, 구술자료 등 체계적인 기초자료의 보존노력이 얼마나 절실하며 중요한지를 실감하였습니다. 광천지역 3·1독립운동도 아직 일제강점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녹취하고 기록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기초자료를 모으고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광천제일고 이민형 교사]

- 아산 3·1운동 기초자료조사사업의 경우 행사중심보다는 사료 보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좌장 김일환 교수]

〈좌장 정리〉

구한말 일제강점기 광천지역 독립운동정신 계승방안 마련을 위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며, 광천지역만이 아닌 내포지역 나아가 충남지역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

작년 아산 3·1독립운동 기초자료조사사업을 하면서 아산지역에 독립운동 흔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천안의 독립운동은 알아도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음.

아산은 67개 단체 연합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기본적 컨텐츠 조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에 6개월간 연구조사 작업을 의뢰하였으며, 진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

- ① 독립운동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온 지금에서야 문헌자료를 찾아보니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음.
- ② 지손들을 통한 사실을 전해 듣고 구술자료라도 남겨야 하는데 생존하신 분들도 적을뿐더러 현재는 80~90대 노인이 되어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생존하신 분들이 더 많았을 때, 생존자 분들의 기억력이 조금은 더 온전했을 10~20년 전에만 자료를 찾고자 노력하고 구술, 사진 등을 자료로 남겨놓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더 많은 역사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컸음.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의 사진 한 장 안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이라도 기록을 찾고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기념관이나 시설을 짓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나 생존자가 줄어들고 기억이 잊혀져가는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금 찾고 보존해야할 것이며, 이는 조국을 지키고자 역사에 몸과 마음을 바친 선대에 대한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함.

민족운동사 전반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거대한 자료의 보고를 구축한다면 연구자들이 항상 겪고 있는 자료의 빈약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행사중심보다는 잊혀지지 않는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람.

[순천향대학교 김일환 교수]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2019년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광천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담은 '홍성 3·1독립운동실록' 발간
2.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일제강점기의 사진들을 기록하고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광천지역에서 펼쳐졌던 3·1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일제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음.
-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지켜나가기 위한 예산지원과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
 - 충청남도(복지정책과)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연구모임 개최 결과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18. 12. 20.(목), 14:00~16:30/ 광천제일고등학교 소강당 〉



I 개최 개요

- 연구목적 :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 일 시 : 2019. 1. 10.(목) 15:00 ~ 17: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 토론내용 : 2019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및 사업예산 관련 토론, 연구모임 운영 및 일정 협의 등

II 개최 결과(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은 지난 10일(목) 제3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충청도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모임은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올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사업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숙 의원 외에 김명선 의원(당진2), 김기서 의원(부여1), 안장현 의원(아산4), 박찬무 회원(사회적기업 즐거운 밥상 대표), 김혜경 회원(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등도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자리에 참가한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과정을 2019년도 역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숙 대표(청양)는 “2019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사회적경제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이 없어 미집행된 예산의 사례도 볼 수 있었다”며, “올해는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의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를 확대 발굴해 사각지대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김기서 의원(부여1)은 “지난해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를 사회적기업에게는 5천만원으로 확대시켰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부처의 조달에서도 확대 건의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현 의원(아산4)은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연구모임 회의나 토론회, 워크숍 등 네트워크 추진 시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관련 담당자도 참석해 교육 분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무 회원(사회적기업 즐거운 밥상 대표)은 “창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교육수료에서 창업단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조직 사이에 공공구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혜경 회원(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그동안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업종 변경 등의 자생적인 연구역량이 따르지 못했다”며,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초 환경 조사와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충남의 현장 활동가, 정책연구 및 행정가 등 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서울특별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 2019년 첫 행사로 안전체험교육, 화재 및 지하철 등 사고시 피해 최소화하는 반복훈련 필요

- 각종 재난안전 체험교육하는 '광나루 안전체험관' 방문 및 체험
-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난안전교육 강화 필요성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희걸, 양천4, 더불어 민주당)는 도시 인프라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문장길, 강서2,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19년 첫 행사를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화재 대피체험 등을 하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서울시민이 안전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나루안전체험관은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를 계기로 2003년 3월에 전국최초로 건립된 종합안전체험관으로서 지상3층/지하1층(연면적 5,444.5㎡)의 규모이며, 체험 시설은 화재, 선박, 지진, 태풍, 건물탈출,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등 총 21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일 평균 680명, 연평균(2017~2018)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개관 이후 총 263만 명의 전국 최다체험객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체험시설이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개장한 '비상 급정거, 지하철 체험장'과 세월호침몰사고를 계기로 2017년 3월에 개장한 '선박안전체험장', 화재·지진·심폐소생 등 생활안전체험, 체험관 건물 외벽을 활용한 3층 높이 야외피난 완강기체험 등 신설 콘텐츠를 소개받았다.

이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체험관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하철 화재와 건물 화재 등에 대비한 완강기 등 대피훈련을 직접 체험한 후 우리사회에 여러 재난 사고의 아픔이 깊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재난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많은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몸으로 직접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체험을 통해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신규 안전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 모두가 반복적인 재난안전체험을 통하여 인재(人災)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험관 홍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시민안전체험관에 당부했다.

한편, 문장길 의원은 우리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이 2개에 불과해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한 권역별라도 1개씩은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생활과 연계된 현장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연말 서울특별시 제15기 정책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는 겨울철에 빈번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전문가 특강을 듣고 소방과 관련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현장체험이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시의회, '오직 민생' 새해 벽두부터 광폭 민생행보출범

- 간호사회, 남포지하상가 상인들과 간담회
- 박민성 의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조사 참여
- 민생현장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바로 반영

2019년 새해 들어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는 민생 챙기기에 '열일' 중이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부산간호사회 소속 현장 근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여건과 처우 등 현안 해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7일에는 민생경제특위(위원장 곽동혁)에서는 남포 지하상가의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수의재계약 문제에 대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생광장'을 진행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이번 소통간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면서 더욱 진솔한 대화가 가능했다”며 “민간단체와 의회가 서로 현안을 공유하고 부산시의 건강·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동혁 위원장 역시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시로 만나고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박민성 의원(동래구)과 부산시 관계자들은 7일 부산의료원 의무기록 보관실을 방문해 형제복지원이 문을 닫은 1987년 이전의 의료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한 형제복지원 관련 기록은 사망자 명단 등과 대조해 폭행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쓰인다. 시의회에서는 14일, 민생행보의 하이라이트가 될 '2019년 신년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대시민 소통·홍보 강화 방안을 포함한 새해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의회

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 1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 지속적인 민의수렴 및 민원상담으로 대민 의정활동 전개

회기가 없는 1월(동절기)에도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공백없는 대민 의정활동이 전개된다.

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미영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의원 일일근무를 실시하여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229-5063)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를 하면 당직 의원이 민원과 직접 상담한 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민원 해결에 나선다.

또한,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과 계획 등을 별도 통보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월과 8월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 근무를 실시하여 시민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백없는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은 11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와 관련, 대한민국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 훈육, 여성선수 성폭력 근절에 힘을 보탬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 체육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수석대변인(문체위, 군포)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건 추가의혹을 전해 듣고, 차오르는 분노에 치가 떨렸다. 또한, 수많은 무명의 선수들이 이와 같은 폭력과 심지어는 성폭행에까지 노출되어 있으며, 사실을 밝혀도 은폐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자정노력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 체육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선진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지양하고, 폭언, 폭행, 성추행과 성폭력은 물론, 폭력에 준하는 가혹행위 등으로 세분화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경기도가 육성하는 모든 분야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 징계, 사후관리를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충북도의회장, 2019 신년화도 '민의동행(民議同行)'

- 163만 도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실천의지 담아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27일 기해년(己亥年) 신년화두로 '민의동행(民議同行)'을 선정·발표했다.

민의동행(民議同行)은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길을 간다'는 의미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충북도의회가 도민들과 함께하면서 손을 맞잡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민심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내부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고 집행부 견제와 협력, 현안 해결 등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의원 국외연수를 혁신해 전국 모범사례라는 찬사를 받았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원 징계 규칙을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급식비 문제로 대립했던 집행기관을 중재해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물꼬를 텃고, 소방 병원 유치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안 채택, KTX오송역활성화 특위 구성 등 지역현안에도 적극 대처했다.

장선배 의장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 2019년을 '민의동행'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 도민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필리핀 이주여성대표, 경상남도의회 의장 방문

- 지난 12월, 필리핀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빈소 조문에 따른 감사
- 김지수 의장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가정폭력 재발 방지 등에 노력”

1월 7일(화) 양산시 이주여성대표 이자클린 일행이 필리핀 전통음식 비코를 만들어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을 찾아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양산지역 필리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김지수 의장과 표병호, 성동은, 김경영, 김영진 의원이 양산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마련된 추모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문하고, 관계자를 격려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산시 이주여성대표 이자클린은 “필리핀에서 이역만리 한국까지와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이주여성이 가정불화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에 의장님과 도의원께서 직접 방문하여 위로해주시고, 보내주신 관심 덕분에 고국에서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필리핀 전통음식을 준비해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김지수 의장은 “2018년 12월 현재 경남도내에 다문화 가정은 18,725세대로 전국에서 4번째, 경남 전체 세대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 결혼이민자는 8,450명에 달한다.”면서, “경상남도에서는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사건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만구)는 4·3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이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4·3특별법은 1999년이 저물어 가는 12월(12.26)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새천년 1월(1.12)에 공포되었습니다. 어느덧 4·3특별법이 만들어진지 20년입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엄동설한에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주도민과 선배 도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 4·3특별위원회는 당시 도민과 유족의 열망, 선배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넣겠습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도 이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4·3왜곡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민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냈습니다.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진상조사와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로 당당히 자리 잡은 시대상황에 맞는 4·3특별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특별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내겠습니다.

도내 각 기관과 단체, 유족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도 추진하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써 내려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개정 법령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고등교육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적실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6항).
- 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제14조의2제1항).
- 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 라.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 마.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 바.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제14조의2제3항).
- 사.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2제4항 신설).
- 아.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제14조의2제5항 신설).
- 자.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2.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임의적 취소처분 대상으로 전환함.

또한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 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며, 자율주행자동차·자동주차 등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제2조제7의2호, 제17의2호, 제16조 신설 등).
- 나.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함(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50조제4항 등).
- 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제34조의3 신설 등).
- 라.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제49조제1항제4호·제6호 등).
- 마. 자동차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제1항 등).
- 바. 운전면허 취득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3조제1항제3의2호 신설).
- 사. 갱신 시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고령 운전자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73조제5항 신설, 제87조제1항 등).
- 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제93조제1항).
- 자. 하위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제93조제1항제11호).
- 차.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98조의2 신설).

3. 근로기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해고의 예고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제26조, 현행 제35조 삭제).
- 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신설).
- 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3조제11호 신설).
- 라.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100조).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개정시 부칙에 둔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등 관련)

[의견18-0290, 2019. 1. 10., 경기도 성남시]

【질의요지】

종전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경기도포천시규칙 제393호로 2017년 2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포천시규칙”이라 함) 제3조제2항 제1호바목에 따른 소매점포 안에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인근에 개정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경기도포천시규칙 제393호로 2017년 2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포천시규칙”이라 함)이 시행된 이후에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한 자의 경우, 개정 포천시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고(제1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이하 “소매점포”라 함)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를 3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포천시규칙에서는 위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합니다(법제처 2016. 11. 10. 회신 16-0444 해석례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 포천시 규칙 부칙 제2조의 문언 해석상 같은 규정의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이란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른 지정신청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한 자”란 “개정 포천시규칙 시행 당시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하여 소매인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포천시규칙 시행 이후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바목에 따른 소매점포 안에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인근에 새로이 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개정 포천시규칙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종전 포천시규칙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나 지정신청을 하여 소매인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개정 포천시규칙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개정 포천시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종전 포천시규칙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의견18-0290, 2019. 1. 10., 경기도 성남시]

【질의요지】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지역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성남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성남시에서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사업이 성남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성남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먼저,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이하 “성남시 조례안”이라 함)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당시 사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5호라목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지역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성남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은 성남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의 성남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성남시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일과 그 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은 달리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남시에서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과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의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해당사업이 성남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성남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